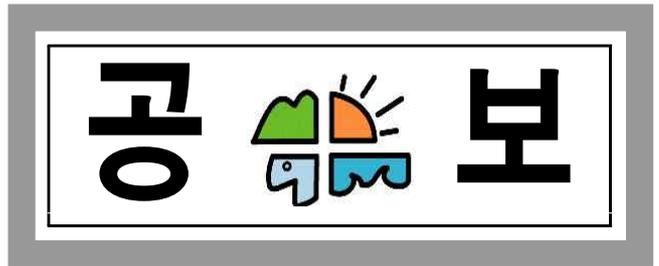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34호 2012년 11월 16일(금)

조 례

-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규 칙

-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11월 16일

속초시조례 제2308호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곤궁(困窮)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급수시설, 오수정화조, 난방시설, 복도·계단등(燈)에서 공용전기로 사용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다만, 입주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만으로 입주한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일괄신청 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지원신청 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금액 등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그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이거나 경우에는 시가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공동전기료는 시행일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11월 16일

속초시규칙 제1293호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 나. 물품운용관 : 실·과·단장
- 다.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
- 라. 분임물품출납원 : 실·과·단 주무담당

2. 속초시의회

-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 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 가.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
-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4. 동

- 가. 물품관리관 : 동장
- 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및 속초시의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나. 회계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2. 속초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직속기관의 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나. 사업소의 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4. 동

가. 동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u></p> <p>1. 시</p> <p>가. 본청</p> <p> <u>물품관리관 - 회계과장</u></p> <p> <u>물품운용관 - 실·과·단장</u></p> <p> <u>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u></p> <p> <u>분임물품출납원 - 실·과·단 주무담당</u></p> <p>나. 직속기관·사업소</p> <p> <u>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경우 그 관서의 장)</u></p> <p> <u>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u></p> <p> <u>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u></p>	<p><u>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u></p> <p>1. 본청</p> <p> <u>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u></p> <p> <u>나. 물품운용관 : 실·과·단장</u></p> <p> <u>다.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담당</u></p> <p> <u>라. 분임물품출납원 : 실·과·단 주무담당</u></p> <p>2. 속초시의회</p> <p> <u>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u></p> <p> <u>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u></p> <p> <u>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u></p> <p>3. 직속기관 및 사업소</p> <p> <u>가. 물품관리관 : 관서의 장</u></p> <p> <u>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u></p> <p> <u>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u></p> <p>4. 동</p> <p> <u>가. 물품관리관 : 동장</u></p> <p> <u>나.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u></p> <p> <u>다.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u></p>
<p><u>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u></p> <p>1. 본청</p> <p> <u>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 가격으로한다. 이하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u></p> <p> <u>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u></p> <p>2. 직속기관·사업소, 동</p>	<p><u>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및 속초시의회와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u></p> <p>1. 본청</p> <p> <u>가. 부시장 :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u></p> <p> <u>나. 회계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u></p>

직속기관·사업소의장, 동장 - 단가 10
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속초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
하의 물품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직속기관 의 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나. 사업소의 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
의 물품

4. 동

가. 동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